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1994. 3.

諸 成 鎬(政策研究室 研究委員)

金 道 泰(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I. 問題提起	3
II. 北韓의 協商戰略과 協商戰術	4
1. 協商戰略	4
가. 對南 協商戰略	4
나. 對美 協商戰略	5
2. 協商戰術	5
가. 協商戰術 關聯 北韓體制的 特性	5
나. 協商戰術의 一般的 特徵	6
III.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術 및 行態 分析	9
1. 閉鎖性에 기인한 非公開戰術	9
가. 疑惑의 最大限 增幅	9
나. 協商의 秘密主義 選好	9
2. 窓口 多元化 및 差別化 戰術	10
3. 非道德性·不誠實에 기인한 欺瞞戰術	11
가. 事實의 隱蔽·造作·歪曲	11
나. 合意事項의 一方的 破棄	13

4. 時間的 無制約에 따른 遲延戰術	15
가. 合意 또는 義務履行의 遲延	15
나. 提議·主張의 反復	17
다. 前提條件 提示	18
5. 名分重視 戰術	20
가. 原則的 合意 強調	20
나. 一括妥結 指向	22
6. 攻勢的인 協商戰術	23
가. Zero-Sum方式 協商 持續 및 戰術的 變化 追求	23
나. 「極端外交」 遂行	24
다. 奇襲提議 및 協商議題 變更	25
IV. 綜合的 分析·評價	27
<附錄> 1993年度 核關聯 北韓의 主要行態	31
1. 北韓의 NPT 脫退 宣言	31
2. 協商當事者別 北韓의 主要行態	32
가. 北·美協商의 경우	33
나. 北·IAEA協商의 경우	38
다. 南北協商의 경우	40

I. 問題提起

- 북한의 NPT탈퇴 선언 이후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당면 최대현안으로 대두된 후 同 문제 해결을 위해 2차례의 북·미회담과 IAEA사찰을 위한 북·IAEA회담이 개최된 바 있고, 남북한간에도 특사교환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IAEA의 全面的 査察과 北韓 核透明性 제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핵관련 협상당사자들이 북한의 협상전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단계에서 과거 북한이 한국휴전협상과 남북협상 등에서 보여 준 協商行態의 재조명은 북한의 협상전술에 대한 대응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휴전협상 및 남북협상 등 기존의 협상사례에서 나타난 북한의 일반적인 協商戰術을 정리하는 한편, 이에 비추어 93년도 핵관련 북한의 협상행태를 검토하고자 함.

II.北韓의 協商戰略과 協商戰術

1. 協商戰略

가. 對南 協商戰略

- 북한은 3대 혁명역량의 배치상황에 따라 對南戰略의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왔음.
 - 3대 혁명역량의 전반적 강화기: 전쟁과 무력도발 및 남조선 혁명 추구
 - 3대 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기: 위장평화 공세와 남북대화 추진
- 최근 북한은 경제난 심화, 공산권의 붕괴와 한·소 및 한·중수교 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3대 혁명역량의 약화기에 처해 있는 바, 對南戰略의 비중을 韓半島 共產化(최대·최종목표)에서 體制維持(최소·당면목표)로 전환하고 있음.
-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對南 協商戰略을 南北共存으로 설정하고, 남북협상을 통해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체제 와해 등 한미관계 이간을 기도한 바 있음.
 - 최근 북한은 남북공존을 위해 연방제 통일방안의 수정 가능

성 시사, 1995년 통일설 조성 등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나. 對美 協商戰略

- 북한은 종래의 대남혁명 여건조성 전략의 비중을 낮추고, 핵카드 활용을 통한 北韓 體制維持 擔保戰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북한은 핵관련 대미 협상전략을 北韓體制 認定 및 對美關係 改善에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상목표로서 ① 주한미군 철수, ②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한·미관계 離間, ④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난 해소, ⑤ 외교적 고립 탈피, ⑥ 수교 등을 설정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核疑惑을 최대화 증폭시키고 있고, 핵문제와 기타 현안문제의 一括妥結을 주장하고 있음.

2. 協商戰術

가. 協商戰術 關聯 北韓體制의 特性

- 북한체제는 ① 閉鎖性, ② 意思決定의 非民主性, ③ 黨과 政治

指導者 中心의 制限責任, ④ 儒敎的 傳統과 名分 重視, ⑤ 體制 維持 手段으로 外勢의 壓力 利用 등의 特性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은 서방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되어 왔으며, 서구국가와의 외교교섭 경험이 적음.
- 의사결정과정의 民主化되어 있지 못하며, 위로부터의 지시와 방침은 무조건 관철되어야 함.
-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하의 권력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黨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책임만이 중시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문제되지 않음.
- 유교적 전통 및 봉건적·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名分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외세의 압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민의 단결을 강조하고 체제유지를 도모하고 있음.

나. 協商戰術의 一般的 特徵

○ 北韓體制의 고유한 특성은 북한의 協商戰術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바, 북한의 협상전술은 ① 합리적 가치 무시, ② 협상대표의 권한 제한, ③ 시간적 무제약성, ④ 공세적·전투적 방식의 협상 추구, ⑤ 양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 성실성, 신뢰

- 등의 合理的 價値를 무시함.
 - 권위주의체제의 영향으로 협상대표의 권한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엄격히 상부의 지시를 받아 협상을 추진함.
 - 黨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책임만이 중시되는 결과 협상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여론에 의한 時間的 制約을 받지 않음.
 - 지나친 명분중시 경향으로 名分과 實利에 대한 균형감각을 상실함으로써 일반적 협상과정의 경우와 같이 협상상대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승리와 패배로 대비되는 攻勢的·戰鬪的 방식의 협상을 추진함.
 - 북한의 협상행태는 외국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비타협적 성격을 띠며, 妥協이나 讓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임.
- 북한은 협상 당시의 상황,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協商戰術을 배합·구사하여 왔음.
- 공세적인 협상기법으로 기선제압
 - 의제 구성시 결론삼입
 - 실현가능성 없는 제의 제시
 - 주요 協商議題의 전제조건화
 - 협상지연
 - 제의·주장의 반복
 - 상대측 대표단의 혼란 및 이간 등

- 특히 협상의제와 관련, 북한은 선제제의, 기습제의, 반복제의, 추가제의 또는 협상의제의 변경 등 다양한 전술을 복합적·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先制提議를 통해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쳐 협상 주도권을 장악함.
 - 奇襲提議를 통해 협상의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도하에 협상을 진행함.
 - 反復提議를 통해 상대방 양보의 한계를 검토하는 동시에 대내 선전에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통합 및 대외적 명분 축적을 기도함.
 - 追加提議를 통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협상목표 달성을 부단히 추구함.

- 북한은 원칙적 합의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일부만을 대내외적으로 과장 홍보·선전함으로써 본래의 協商目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전선 구축 등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함.
 -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사실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통일지향성 선전 및 평화이미지 제고를 모색하였음.
 -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리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를 도모함.

Ⅲ.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術 및 行態 分析

- 북한 협상전술의 一般的 特徵과 최근 북한의 協商行態를 감안하여 북한의 협상전술을 ① 폐쇄성에 기인한 비공개전술, ② 창구 다원화 및 차별화 전술, ③ 비도덕성·불성실에 기인한 기만 전술, ④ 시간적 무제약에 따른 지연전술, ⑤ 명분중시 전술, ⑥ 공세적 협상전술 등으로 대별하고, 북한이 1993년에 보인 핵관련 협상행태를 이러한 6가지 전술범주 속에서 검토함.

1. 閉鎖性에 기인한 非公開戰術

가. 疑惑의 最大限 增幅

- 북한은 NPT 탈퇴 선언 후 “미끼가 커야 큰 고기가 문다”는 명제를 기초로 核疑惑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선례를 찾기 어려운 보기 드문 협상전술로서 많은 위험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 북한 핵문제는 이 문제가 국제화된 1991년 중반기보다 훨씬 더 큰 의혹을 주고 있음.

나. 協商의 秘密主義 選好

- 북한은 과거 휴전협상 과정에서 소위 「미제국주의의 침략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협상내용의 공개를 통해 대내외에 북한의 暴力性 이미지 불식과 평화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음.

- 최근 북한은 핵관련 대미협상에서 공개적인 협상보다는 비공개적인 幕後協商을 통한 합의 도달을 선호하며, 공개협상에서는 교섭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협상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비밀주의를 선호하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북한의 협상태도는 협상관계자가 공개협상에서는 자신의 투쟁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김일성 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位相과 權威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됨.

2. 窓口 多元化 및 差別化 戰術

- 북한 핵문제의 國際的 性格으로 인하여 현재 다차원의 협상창구가 개설되어 이를 통해 多角的인 해결방법이 모색중에 있는바,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으로서는 유례없는 일임.
 - 과거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북·미간 및 남북간 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점에서 二元的 接近(Two Track Approach) 전술이었는데 비해,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三元的 接近(Three Track Approach)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미국에 대해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한편, 핵문제 관련 對話窓口의 多元化 및 差別化를 통해 協商立地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음.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북·IAEA 협상, 북·미협상, 남북대화라는 3원적인 대화통로를 개설한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단절 또는 재개하는 한편, 주요 협상상대와의 대화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國際共助體制의 弛緩을 기도하였음.
- 북한은 여러 협상상대중에서도 특히 「主 北·美對話, 從 南北對話」 方針에 따라 북·미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남북대화를 대미협상의 下位體系로 인식하고 있는 바, 남북간 특사교환의 실질적 성사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북·미 회담 비중을 높여 대미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

3. 非道德性·不誠實에 기인한 欺瞞戰術

가. 事實의 隱蔽·造作·歪曲

- 북한은 전체 사실중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원하는 방향이나 논리에 따라 이들을 再組立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실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결론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부주의 또는 실

수를 포착, 확대해석함으로써 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협상전술을 선호하고 있음.

- 과거 북한은 대서방 및 남북 협상에 있어서 치밀한 계산하에 사실의 隱蔽·造作·歪曲 등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음.
 - 휴전협상시 북한은 북한이 체포한 포로 숫자의 왜곡, 세균전 공세, 습격·매복 사건조작 등을 통해 선전효과와 협상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였음.

- 북한은 1993년 한해 동안 事實의 隱蔽·造作·歪曲을 통해 핵관련 협상에 있어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음.
 - 1992년 5월~1993년 2월까지 6차례 실시한 IAEA의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IAEA의 사찰결과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IAEA가 북한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계속해서 플루토늄 추출사실을 은폐하였음.
 - 북한은 IAEA가 제3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사찰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2곳의 미신고시설은 군사시설로서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당한 구실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였음.
 - 북한은 특별사찰을 둘러싼 북·IAEA간의 분쟁을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의 정당한 특별사찰 요구를 북한의 國家主權 침해

로 호도하는 동시에 NPT탈퇴 선언을 NPT 제10조에 의거한 「국가의 最高 主要利益 侵害」에 따른 합법적 조치로 위장·정당화하였음.

- 또한 북한은 핵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인 특별사찰 受檢要求를 IAEA의 公正性과 中立性 상실로 왜곡하였음.

나. 合意事項의 一方的 破棄

- 과거 북한은 미리 구상해 놓은 계획에 따라 기합의된 사항을 위반하기 시작하고 상대측이 이를 확인·조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으며, 북한측에 불리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해석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통역상의 瑕疵를 이유로 합의 사항을 부정하기도 하였음.
- 과거 북한은 합의사항의 이행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사항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履行·實踐機構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기존의 합의를 파기·무효화하였음.
 - 휴전협상에서 북한은 포로송환과 관련, 강제송환 불가원칙과 송환의사 심사절차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심사결과가 밝혀지자 합의사항을 무효화시켰음.
 -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남북대화 및 남북조절위원회의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7.4 남북 공동성

명을 死文化시켰음.

- 북한은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정치분과위 회의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합의사항을 파기하였음.
- 남북한은 불가침분야 附屬合意書에서 쌍방 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운영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직통전화 설치에 불응하였음.

○ 북한은 1993년도 핵관련 협상에서도 합의사항의 일방적 파기, 이행·실천기구의 가동 중지, 또는 그와 같은 권리를 유보하는 입지확보 등 행태를 보였음.

- 1993년 1월 29일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공동위원회 가동을 중지하는 한편, 5월 25일 남북한간 특사교환 제의를 통해 기존의 고위급회담 무효화 및 기본합의서체제 와해를 기도하였음.
- 북한은 6월 11일 北·美 共同聲明에서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임시정지키로 합의하였는 바, 이로써 북한은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NPT탈퇴, 즉 기존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음.
- 북한은 IAEA 등 國際社會의 압력에 반발하는 표시로 10월 5

일~8일로 예정된 제2차 북·IAEA간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음.

- 북한은 국제적 압력을 희석시키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4일 4차 접촉 및 11월 중 특사교환에 합의하였으나, 곧이어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11.2)을 빌미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

4. 時間的 無制約에 따른 遲延戰術

가. 合意 또는 義務履行의 遲延

- 북한은 회담진전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상대측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음.
 - 時間概念과 관련, 북한은 '업무의 효율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서구식 개념과는 달리 '목적달성을 위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해하고 있음.
- 북한은 휴전협상 및 남북협상에서 협상의 장기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피로감과 지루함을 안겨주는 동시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조급성을 자극함으로써 양보를 강요하는 遲延戰術을 구사한 바 있음.
 - 북한은 포로송환문제의 타결을 2년간 지연시킴으로써 유엔

군축이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양보하도록 압력을 넣는 한편,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을 하려고 노력하였음.

-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콘크리트 장벽 철폐, 문익환 목사 석방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진행을 방해하였으며, 4차 고위급회담을 위한 實務代表接觸 과정에서 소련내 쿠데타가 발생하자 사태추이를 관망하기 위하여 실무대표접촉을 지연시켰음.

○ 북한은 1993년도 핵관련 협상에서도 상대방 요구의 이행과 관련, 지연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하였음.

- 2차례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지지 및 경수로 대체 지원을 위한 협의 표명 등을 약속받음으로써 많은 외교적 성과를 달성한 반면,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에 의한 북한 핵시설의 特別査察을 실현하려고 한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켰음.

- 북한은 IAEA와 사찰문제 협의를 위한 협상을 1차례 개최(평양: 8.31~9.4)하였으나, 북한이 IAEA의 公正性 문제를 시비함으로써 핵안전조치에 관한 합의도출 및 임시·일반사찰을 지연시켰음.¹⁾

-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특사교환 일자를 계속 수정제의하여 특사교환을 지연시키면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고 북한측 주도하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남북대화와 관련

1)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IAEA 사찰단의 입국비자 발급을 지연시켰음.

우리 정부 당국자간 이간 및 혼란 조성과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을 기도하였음.

나. 提議·主張의 反復

- 북한은 상대측이 수락하기 어려운 案의 반복제의를 통해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를 토의의제로서 既定事實化하려는 경향이 있음.
- 과거 북한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구조건을 계속 반복하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되풀이함으로써 상대방을 지치도록 유도,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하였음.
 - 휴전협상에서 북한은 38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문제, 개성회담장 문제, 포로송환문제 등에서 반복주장을 하는 전술을 사용하였음.
 -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주로 國家保安法 철폐 및 방북인사 석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였으며, 특히 제3차 南北高位級會談까지 先 북남 불가침선언 채택 등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을 반복 주장하였음.
- 북한은 NPT탈퇴 선언 후 NPT복귀의 전제조건을 계속 反復主張함으로써 이를 협상의제로 삼으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음.
 - 허종 유엔주재 부대사의 NPT 복귀조건 발표는 1993년 3월

17일, 4월 21일, 5월 27일, 10월 22일에 다시 반복되었음.

- 북한은 미국과의 2차례 핵협상에서 궁극적인 협상목표인 미 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미·북한수교 등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계속 반복하였음.
- 남북한간 特使交換 제의와 관련, 북한은 국제공조체제 및 핵전쟁 연습 중지를 5차례(5.25, 8.9, 8.31, 9.8, 9.21) 반복 주장하였으며, 매번 실무접촉시마다 상기 2가지 조건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회담을 결렬시켰음.
- 북한은 1993년 11월 12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핵문제와 기타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한 이래 朱昌俊 駐中大使의 기자회견(12.3) 및 빈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의 IAEA 정기이사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일괄타결방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음.

다. 前提條件 提示

- 북한은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前提條件을 제시하여 협상의 중단 내지 결렬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표면상의 주된 제안과 전제조건이 실질에 있어서 뒤바뀌는 경우도 있음.
- 북한은 협상초기부터 비합리적 요구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 바, 이것은 북한이 후에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과거 북한은 남북협상에서 前提條件을 제시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무효화시키는 행태를 보였음.
 -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1992.7.5)에서 남북한은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공연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인모 송환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무효화시켰음.

- 북한은 NPT탈퇴 선언으로 核問題를 협상카드화한 이후 다양한 협상창구를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협상목표들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측의 양보를 강요하였음.
 - 북한은 NPT탈퇴 선언의 번복조건으로 ①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지, ② 남한내 미군핵무기 및 핵기지 공개, ③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협상의제로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최대한의 協商利益을 확보하려고 기도하였음.
 - 북한은 1993년 11월 12일 미국에 대해 一括妥結 方案을 제시하면서 핵투명성 보장 대가로 ①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② 核 先制不使用 문서보장, ③ 북·미수교, ④ 국가승인, ⑤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⑥ 경수로 전환 지원 등을 요구하였음.²⁾

2) 북한의 경수로 전환 지원에 대한 요구는 북한이 과거 휴전협상에서 자주 사용했던 「영똥한 요구」 제시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음.

- 북한은 제1단계 북·미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에 IAEA의 公正性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북·미협상 및 북·IAEA협상에서 IAEA의 불공정성 시정을 IAEA사찰 수용의 전제조건화 하였음.
- 북한은 남북한간 특사교환을 위한 협상에서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핵전쟁연습 중지, 國際共助體制 포기 등 2개 요구조건을 공식 제기하였음.

5. 名分重視 戰術

가. 原則的 合意 強調

- 북한은 협상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장과 협상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결없는 지속적인 거래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 상호 異見이 있을 경우, 차이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일반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견을 호도한 ‘합의를 위한 합의’ 또는 原則的 合意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 일반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문안작성상의 편의를 구실로 합의서 채택을 통해 대외적으로 합의에 접근해 있는 것 같이 호도하려는데 있음.
- 북한은 일종의 ‘합정’으로써 원론적인 原則的 合意文書를 채택하는 데는 쉽게 호응하지만, 이 원칙적 합의 내용에 부여하는

의미는 객관적 의미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음.

- 북한은 7.4 공동성명과 같은 원칙적 합의문서에서 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상대측이 반대하기 곤란한 용어 삽입을 고집하였는 바,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측이 명문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에 의해 ‘반민족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북한에 의해 恣意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들임.

- 북·미간에 2차례 열린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발표문(1993.6.11) 및 공동보도문(1993.7.19)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原則的 合意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북한은 3단계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에서 미국측 의무사항의 履行을 강조하는 한편, IAEA의 임시·일반사찰 수용 등 자기의 의무이행은 지연시키고 있음.³⁾
 - 특히 6월 11일자 북·미 공동성명의 북한측 번역본에서는 양국간의 원칙적 합의사항으로서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impartial application of fullscope safeguard)을 명시하고 있는 바, 북한은 이 문구를 이용하여 기실시한 IAEA의 대북사찰이 불공정한 것이었음을 선전하는데 주력하였음.

3) 한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993년도에 우리측의 핵통제공동위 재개 및 특사교환시 핵문제 우선협의·해결 제의를 거부하고 상호핵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이후 ‘일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사찰’이라는 原則(동 선언 제4항)과 疑心同時解消原則을 경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의 성역없는 사찰 및 불시사찰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판단됨.

나. 一括妥結 指向

- 과거 남북협상에서 북한은 불리한 내용(예: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애초부터 이행·실천의 의지가 없으면서 합의사실을 단순히 선전목적에 이용하려 할 경우 一括合意·同時實踐을 강조한 바 있음.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一括合意·同時實踐 戰術을 통해 한국의 「건별합의·즉시실천」 주장을 무력화한 바 있음.

- 북한은 핵관련 북·미협상에서도 핵문제 해결후 미국이 關係正常化 條件으로 향후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 인권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핵문제 해결과 기타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이 일괄타결을 견지하는 것은 미국이 제시한 段階的 解決方式, 즉 「선 핵문제 해결, 후 관계개선문제 협의」를 수용할 경우 핵카드의 효용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 이와 관련, 북한은 영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대미협상에서의 일괄타결을 위한 最後手段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음.

- 과거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一括合意·同時實踐을 강조

한 것은 합의사항의 이행·실천을 회피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비해, 핵관련 협상에서 북·미간 일괄타결을 강조하는 것은 단계적 합의를 할 경우 미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6. 攻勢的인 協商戰術

가. Zero-Sum方式 協商 持續 및 戰術的 變化 追求

- 북한은 일반적으로 협상의 構造를 목적달성을 위한 手段으로 간주하고,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하는 제로-섬게임의 구조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
 - 북한은 협상상대와의 타협과 양보를 통한 共同利益을 추구하지 않으며, 협상의 결과가 북한의 일방적인 승리와 상대방의 일방적 패배로 귀결될 때까지 협상이 종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함.
 - 상대방의 체면이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며 상대측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음.
 - 이를 위해 북한은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화불가피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대화 및 협상의 主導勸을 확보하고자 함.
- 북한은 1993년 핵관련 북미협상에서 타협과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Non-Zero-Sum Game의 協商을 追求하여 技術적 變化를

보였는 바,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대미 협상력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협상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임.

- 북한은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지위 확보, 사실상의 북한체제 인정을 통해 國際的 位相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측으로부터 경수로 교체 지원에 대한 협의용의 표명을 얻어냄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보장받았음.
- 미국은 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NPT탈퇴 유보결정을 유도함으로써 NPT 체제유지라는 실익을 확보하였음.

나. 「極端外交」 遂行

- 북한은 「準戰時狀態」 선포에 의한 한반도 긴장조성 및 NPT 탈퇴선언, 공식일정으로 예정된 북·IAEA간 협상의 일방적 취소 등 「極端外交」(brinkmanship diplomacy)를 통해 위협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협상 상대방이 즉각 방어적인 입장에 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기도하였음.
 - 북한은 극단외교를 통해 미국과 한국내에서 야기된 정책 갈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對美 協商力을 강화하려고 기도하였음.
- 또한 북한은 1993년 한해 동안 NPT체제 유지를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압력(LAEA 및 UN의 결의안 채택 등)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양보를 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였음.

- 북한은 특별사찰을 요구할 경우 NPT를 탈퇴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는 등 強硬策으로 일관함으로써 양보를 거부한 것은 과거에 비해 이례적인 일임.⁴⁾
- 이것은 북한 핵문제가 체제수호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바,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IAEA의 특별사찰 수용 및 핵투명성 제고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임.

다. 奇襲提議 및 協商議題 變更

- 북한은 상대측 대표단의 균형을 파괴하고 협상계획을 무력화시키므로써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先制提議·奇襲提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측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상의제를 변경하여 회담의 기선을 장악하고자 하였음.
 - 북한은 휴전협상 및 남북협상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기에 회담을 개최할 것을 고집하는 한편, 북한이 달성하려고 하는 結論을 내포한 의제를 선제제의하여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토의하도록 유도하였음.
 - 북한은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측 대표단에 관련

4) 과거 북한은 남북합작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 제3세계국가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온 반면, 國際社會를 대상으로 극단외교 및 초강경대응을 통한 대결관계 형성을 피해 왔음.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제의(예: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불가침선언 제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비핵지대화선언 제의 등) 전술을 자주 사용하였음.

○ 북한은 1993년도 핵관련 협상에서도 협상의제를 계속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음.

- 북한은 NPT 탈퇴선언을 통해 종래 IAEA의 特別査察 受容 與否와 남북한간 상호 핵사찰을 위한 査察規程 討議에서 ① 북한의 NPT 잔류, ② IAEA 핵안전조치협정 준수 문제, ③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등으로 협상의제를 변경하였음.

- 북한은 1993년 6월 북·미 1단계회담에서 NPT 탈퇴유보를 선언한 특수상황하에서는 핵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준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7월 제2단계 북·미회담을 통해 IAEA사찰 수용이 아닌 협상개시,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하는 한편, 경수로 지원문제 등을 奇襲提議하여 협상의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상의제를 변경시켰음.⁵⁾

- 한편 북한은 한국의 대북서한을 통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5.20)에 대하여 5월 25일 특사교환을 逆提議하여 회담방식을 변경시켰음.

5) 특히 북한과 미국은 제2단계 北·美會談 후에 나온 공동발표문에서 북한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경수로 도입 지지 및 이를 위한 협의 용의 표명을 명시하였는 바, 북한으로서는 이를 통해 경수로 도입문제를 제3단계 회담의 우선적인 토의의제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음.

IV. 綜合的 分析·評價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1993년도에 북·IAEA간 협상, 북·미 협상, 남북대화라는 3元的 대화통로를 개설하고 협상상대와의 대화비중을 주시로 조정함으로써 협상력 차이를 또모하든 한편,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 이와 함께 북한은 협상창구를 差別化하는 전술에 입각하여 한 북에 대해 국제공조체제 포기 및 팀즈피리트 훈련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협상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한미관계 이 간을 기도하였음.
-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목표로 「主 北·美對話, 從 南北對話」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1993년도에 남북대화에 정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이 체제유지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최우선 국가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과제로 보는 반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체제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임.
- 북한은 NPT탈퇴 선언으로 核査察을 협상수단화한 이후 '93년도 한해 동안 핵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협상에서 다양한 전술을 배합·사용하였음.

- 강경에는 초강경 極端外交를 구사하는 極端外交를 불사하였음.
- 북한의 핵의혹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의 은폐 欺瞞을 사용하였고, 특히 입세·일반사찰을 핵안전주최 담당 委員 延속성을 위한 제한사찰로 변형시키는 등 심원 欺瞞을 실시 詐거를 지양시킴을 最大 遲延 最少 公開 戰術을 구사하였음.
- 북미간 主權 존중 및 平等 불간섭, 핵을 포함한 무력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전반적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 개최 등 북·미 關係 개선을 위한 原則的 姿勢를 공동합의문(6.11)과 공동 發表문(7.19)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향후 정치회담으로 발전 契機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음.

○ 특히 북한이 極端外交를 구사하는 것은 핵의혹을 최대한 증폭 欺瞞을 핵개발 활용 전략에 의해선만 ① 북한의 체제 유지 ② 북미관계 개선 ③ 북한의 상대적 고립 유도 등의 협상목표를 일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임.

본질적으로 북한은 國際的 壓力에 대응하여 NPT 탈퇴 선언이라는 一방적인 조치를 취한 이래 ① IAEA 특별사찰 압력 회피, ② IAEA 선찰문제에 앞서는 주유 협상안제로 NPT 복귀 문제 부각, ③ 대미 직접협상 통로 개설 등 성과를 업로드하였음.

이러한 欺瞞의 欺瞞에 비추어 1993년도 핵관련 북한의 協商行態를 欺瞞의 欺瞞과 비교할 경우 欺瞞의 欺瞞으로 欺瞞성을 보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변화의 欺瞞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됨.

- 南北協商의 경우 북한은 「단계적 합의」 전술, 일괄합의·동시실천 전술, 지연전술 등에 의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담의 경과 및 속도를 조절하려 하고 있는 바, 불성실한 자세와 종래의 협상태도 고수 성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國際協商의 경우 핵의혹의 최대증폭, 창구다원화 및 차별화, 극단외교 추구, 비밀협상 선호 등 협상행태의 부분적 변화가 발견되고 있음.
 - 한편 북한이 核關聯 協商에서 북·미간 일괄타결을 강조하는 것은 단계적 합의를 할 경우 핵카드 효용성 상실로 미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사용했던 일괄합의·동시실천 전술과는 동기가 다르다고 할 것임.
- 특히 북·미협상에서는 북한의 대미 유화자세 시현 및 Non-Zero-Sum Game 추구하고 같은 협상행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소수교 및 한·중수교 등에 따른 외교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北·美 直接接觸을 통한 관계 개선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모색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상과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할 때 향후 한국의 對北協商에서는 단호하면서도 보다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북한이 북·미협상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은 國際共助體制를 유지함으로써 남북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북한의 체제 위기상황 및 국제적 고립이라는 약화된 입지를 고려하여 한국은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轉向的인 대북 협상을 추진하도록 함.

<附錄> 1993年度 核關聯 北韓의 主要行態

1. 北韓의 NPT 脫退 宣言

- IAEA가 6차례의 對北 臨時查察 결과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의혹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993년 3월 25일까지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特別查察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2.25)하자, 북한은 3월 8일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였음.
 - 북한은 IAEA가 제3국 情報를 근거로 한 특별사찰 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과 영변의 미신고시설 2개는 일반 군사시설로서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하였음.
 - 북한은 NPT탈퇴 반복의 條件으로 ①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 중지, ② 남한내 미군핵무기와 핵기지의 공개, ③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④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등을 제시하였음.
- 북한이 「준전시상태」 선포, NPT 탈퇴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極限狀況을 조성한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평가됨.
 - 5MW 원자로 연료봉 샘플채취 지연 노력에 한계를 인식,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핵개발 계획을 노출시킬 IAEA

특별사찰 회피

- 핵개발 진전상황에 대한 의혹 증폭으로 핵카드 효용성 및 협상력 강화
 -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등 한·미의 대북 군사압력에 대한 반발
 -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대내 결속 강화
 - 남한을 배제한 가운데 對美 直接協商을 실현시킴으로써 장차 남북대화 재개시 유리한 입지 확보
 - 북한의 총체적 난국 돌파수단인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입지 강화
 - NPT 비가입국 중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지지 기대
- 3월 17일 許鐘 駐 UN 북한 차석대사는 NPT탈퇴 선언 철회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 ① IAEA의 公正性 확보, ②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단, ③ 미국의 핵위협 포기, ④ 남한내 미국의 핵기지 완전 공개, ⑤ 핵공격 불실시 보장

2. 協商當事者別 北韓의 主要行態

- NPT 탈퇴후 핵문제관련 북한의 주요행태를 北·美協商, 北·IAEA協商 및 南北協商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함.

가. 北·美協商의 경우

○ NPT 탈퇴후 북한은 핵문제가 본질상 북한과 미국사이의 문제
이므로 양자간 직접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
장하는 한편, 許鍾 駐 유엔 차석대사는 4월 21일과 5월 27일
NPT復歸를 위한 前提條件을 미국측에 제시하였음.

- 5개조건(4.21): ① 팀스피리트훈련 영구 중지, ② 한국핵기지
사찰, ③ 핵공격 불사용 약속, ④ 「핵우산」 정책 포기, ⑤ 북
한 사회주의 존중

- 6개항의 요구조건(5.27): 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불사
용, ②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③ 주한 미군기지 공개, ④ 미
국의 핵우산제공 중단, 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존중,
⑥ 주한미군 철수

○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유지 뿐만 아니라 核非擴散體制
유지 차원에서 북한 核問題를 중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
거하여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모색하
게 되었으며, 북한과 미국은 1993년 6월 2일~11일간 뉴욕에서
제1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결과 6월 11일 다음과 같은 요지
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 한반도 非核化共同宣言 지지

- 쌍방은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② 전면적인 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 ③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 ④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불간섭, 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의 원칙에 합의

- 쌍방 정부간 평등한 기초하에서 대화지속
- 북한은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

○ 북한은 제1단계 北·美 高位級會談을 통해 IAEA의 특별사찰을 회피하고 NPT복귀가 아닌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임시 정지시키는 한가지 조치의 대가로 대부분의 주장들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보장받는 한편, 북·미간 직접 대화통로 개설함으로써 한국을 소외시킨 가운데 양국간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북·미간 접촉을 政治會談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음.

- 동시에 북한은 NPT 탈퇴유보라는 전제 없는 특수상황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동성명에서 核安全措施의 공정한 적용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IAEA의 특별사찰은 물론 정상적인 임시·일 반사찰을 거부·지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1단계 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7월 14일~19일 제네바에서 3차례에 걸친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음.

- 미국은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NPT 잔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제2단계 회담에서는 IAEA 査察問題 해결에 주력하였음.

- 북한은 2단계 회담에서 ① 핵무기 불사용 문서 보장, ②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지, ③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④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대체 지원, ⑤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 철회, ⑥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6개항을 요구하였음.
- 북한과 미국은 2단계 회담의 결과 7월 19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發表文에 합의하였음.
 - 1993년 6월 11일자 북·미 공동발표문의 원칙 재확인
 -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 합의의 일환으로 「경수로 도입」 지지 및 이를 위한 협의 용의 표명
 -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적용이 國際的 核非擴散體制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데 견해 일치
 -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의 협의와 남북대화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시작할 용의 표명
 - 핵문제관련 현안 및 북·미간 전반적 관계개선 문제 토의를 위해 2개월내(in the next two months) 다음 회담을 개최함.
- 북한은 1993년 6~7월간 2차례의 북·미 회담에서 양국간 공동관심사의 包括的 解決을 강조하는 동시에, 핵문제는 일괄합의·동시실천 방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였는 바,
 - 1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① 핵무기 불사용 문서 보장, ② 팀스피리트 한·미군사훈련의 영구중단, ③ 주한 미

군기지 공개, ④ 대한 핵우산 제공 중지, ⑤ IAEA의 公正性 보장, ⑥ 북한사회주의 체제 존중을 요구하는 한편, 북·미회담을 핵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회담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양국간 共同聲明(6.11)에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政策的問題」들을 논의하였다는 문구를 삽입시켰음.

북한은 애커만 미하원 의원 방북시 수행한 퀴노네스(Quinones)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에게 「일괄타결」 방안에 관한 비공식문서를 전달하였음(10.12).

許鍾 駐 유엔 차석대사는 허바드 국무부 차관보와 접촉하여 미국이 「수교 내지 이에 준하는 조치」를 보장할 경우 핵문제를 총괄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표명하였음(10.22).

북·미회담 북한측 대표인 姜錫柱 外交部 제1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개선 문제를 「일괄타결」(a package deal)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공식담화를 발표하였음(11.12).

* 북한은 미국에 대해 一括妥結方案을 제시하면서 북한측 이행사항으로 핵투명성을 보장(IAEA 임시·일반사찰 수용) 하는 대가로 ① 핵위협 중단(팀스피리트훈련 중지, 핵선제 불사용 문서보장), ② 대북 적대정책 해소(북·미수교, 국가승인,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경수로 전환 지원 등)를 요구하였음.

- 1993년 11월 말 북한에 설치된 IAEA 사찰장비의 교체기한 경과로 사찰의 계속성이 의문시되면서 IAEA 및 UN의 대북한 압력이 증대되자 북한은 미국과 實務接觸을 요구하였으며, 양국은 6차(11.24, 12.3, 12.10, 12.20, 12.22, 12.29)에 걸쳐 비공개 실무 접촉을 개최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였음.
 - 미국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사찰 및 남북대화 진전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및 북·미 3단계회담 개최를 요구하였음.

- 북한은 북·미협상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1993년 한해 동안 5회에 걸쳐 美軍遺骸 148구를 인도, 애커만 미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초청(10.12) 및 판문점 통과, 對美 비난 완화 등 대미 유화자세를 보인 바 있음.
 - 북한은 미군유해 송환조치를 미국과의 접촉창구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국면전환용으로도 활용하였음.

- 미국이 북·미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NPT 脫退 留保 결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음(94.1.31 북한 외교부대변인 성명).
 - 또한 1994년 2월 21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할 경우 NPT 탈퇴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나. 北·IAEA協商의 경우

-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래 IAEA측은 2차례의 對北査察(5월, 8월)을 실시했으나, 북한이 일반사찰을 거부함으로써 IAEA의 사찰은 사찰장비의 점검·보수 수준에 국한되었음.
 - 1993년 8월 3일~10일간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핵시설 감시장비의 배터리와 필름을 교환하였으나, 북한은 5MW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에 대한 접근거부 등 정상적인 사찰활동을 방해하였음.

- 북한은 북·미간 2단계 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8월 31일~9월 4일간 평양에서 IAEA와 사찰문제 협의를 위한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IAEA의 不公正性을 제기함으로써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음.
 - IAEA측은 북한에 의한 사찰범위 제한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 5MW 원자로의 연로봉 교체 검증 및 일반사찰을 요구하였음.

- IAEA는 이사회(93. 9.29) 및 총회(10. 1) 결의안 채택을 통하여 북한의 IAEA 사찰활동 제한으로 核安全措置協定이 불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에게 전면적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자,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10월 5일~8일로 예정된 제2차 북·IAEA간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음.

- 북한 외교부는 10월 4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直接 協商을 주장하면서 IAEA의 결의안을 거부하였음.
- UN 총회가 북한에 대해 核安全措施協定の 전면적 이행을 위해 IAEA에 즉각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0 반대 1 기권 9로 채택(11. 1)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AEA와의 접촉재개를 계속 거부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였음.
- 1993년 12월 말 북·미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包括的 解決方案이 논의됨에 따라 IAEA와 북한은 다시 1994년 1월 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사찰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해 이견을 보였음.
 - 북한은 NPT 완전 복귀가 아닌 NPT 탈퇴유보의 특수상황에서 IAEA의 전면적 사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IAEA 협의는 北·美協商 결과의 기술적 이행 차원으로 인식함으로써 7개 신고시설에 대한 1회 사찰을 주장하였음.
 - IAEA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고 있는 한 IAEA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은 조약 당사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측의 恣意的인 사찰활동 제한을 거부하고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촉구하였음.

다. 南北協商의 경우

- 한·미 양국이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92.10.7~8)에서 '93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이에 즉각 반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성명(93.1.29)을 통하여 모든 南北對話 통로를 폐쇄하였음.
- 1993년 6월 12일 NPT 脫退宣言 발효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핵문제를 民族內部問題化하기 위하여 남북간에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안(93.5.25)하였음.
- 한국은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특사교환 제의를 전향적으로 수용, 남북한간에 1993년 6월 26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특사교환의 임무와 절차 등에 관한 相互意見を 교환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
 - 우리측은 핵문제 우선 협의·해결 입장을, 북한측은 특사교환에서 핵문제와 함께 다른 모든 현안문제들을 包括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
- 북한은 북·미 고위급접촉의 협상통로가 개설된 이후 북·미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특사교환의 실질적 성사에 소극적 입장을

- 보이다가 「'93 을지훈련」을 구실로 특사교환 제의를 自進 撤回 하였음(6.26).
- 한국은 북·미 2단계회담후 IAEA의 對北査察이 지연되자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제안 하였으나(8. 4),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국제공조체제, 제4차 「범민족대회」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제안을 거부하였음(8. 9).
 - 그 후 북한은 2단계 북·미회담 이후 3단계 회담의 조건인 남북 대화 진전을 과시하기 위해 쌍방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任意的級」 특사교환을 제안하고(8.31), 특사교환에서 ① 비핵화문제와 함께 긴장완화와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마련 문제, ② 전민족대단결 문제, ③ 최고위급회담 실현문제 등의 논의를 제시하였음.
 - 우리 정부는 핵문제의 최우선적 협의·해결을 전제로 한 特使交換 제의(9. 2)를 통해 북한의 「임의의 급」 특사교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북한은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주장하였는 바, 이와 관련 10월 2일까지 남북한간 8차례의 의견교환이 있었음.
 - IAEA 총회가 북한의 핵사찰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10.1) 등 북한에 대한 國際的 壓力이 가중되자, 북한은 이를

완화시키는 한편 미·북한 제3단계 회담 성사를 목표로 조건없는 특사교환을 제안하였으며(10. 2), 이에 한국이 호응함으로써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3차례 진행되었음.

- 제1차 실무대표 접촉(10.5)에서 북한은 절차문제를 제시하면서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가지 要求條件과 서해간첩선 문제, 생화학무기 개발문제 등 특사교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문제를 제기하였음.
- 제2차 접촉(10.15)에서 남북한은 특사교환에 따른 節次問題에 관한 입장을 밝혔음.
- 제3차 접촉(10.25)에서 북한은 특사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서(안)를 제시하였는 바, 특사의 임무, 교환시기 등에 의견차가 있었으나 특사의 급, 수행원, 교환방식, 왕래절차, 신변 안전보장 등에 있어서는 의견이 접근하였음.

○ 양측은 제3차 접촉에서 11월 중 특사교환 성사 및 11월 4일 4차 접촉에 합의하였으나, 11월 1일 UN 총회에서 核査察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자, 북한은 11월 3일 우리측 국방장관 발언을 빌미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음.

-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은 담화(11. 3)를 통해 권영해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군사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는 기자회견(11. 2) 내용을 구실로 남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음.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 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
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
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統一情勢分析 94-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3월 일

發行日 1994년 3월 일
